

18세기 중반 조청 국경지대에서의 인신매매

- 1747년 삼례 · 소업 사건을 중심으로 -

류은아*

〈차 례〉

1. 머리말
2. 『續大典』의 서북지역 불법왕래 및 인신매매 금지 규제의 결함
3. 1747년(영조 23) 犯越 · 인신매매 사건과 처리
4. 맺음말

[국문초록]

조선시대 인신매매 금지 규제는 18세기 영조 때 편찬된 『續大典』에 수록되어 정식으로 법제화되었다. 『속대전』 내 ‘人物招引’으로 표현된 인신매매 금지 규정은 육상 및 해상으로의 犯越을 금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규제와 연동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규정은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에서 범월과 인신매매 모두 사형으로 처벌했다. 18세기 영조시기에 인신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난 지역이 함경도뿐만 아니라 평안도 지역까지 대두했고, 이 과정에서 청나라인과의 인신 거래가 의심되었다. 1747년(영조 23, 건륭 12) 두만강 하류 청의 영내에서 체포된 삼례와 소업의 범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들이 청인에게 인신매매된 사실이 밝혀졌다. 인신매매범 이운길은 18명을 함경도로 데려가 16명은 함경도인에게 팔았고, 나머지 2명인 소업과 삼례를 청나라인에게 매대한 것이었다. 인신매매의 피해자는 함경도와 평안도로 이송되었는데, 조선과 청이 인접한 국경지대에서 범월이 증가하는 경향과 함께 이들 또한 경계를 넘어가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범월과 인신매매는 은폐되고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며, 인신매매범 이운길과 피해자 삼례 · 소업의 사례는 18세기에 조선과 청 사이 국경지대에서 인신매매를 통한 이동의 한 예를 보여준다.

[주제어] 인신매매, 초인, 함경도, 국경, 범월, 여성, 아동, 노비, 수교, 속대전, 조선

* 건국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1. 머리말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人身賣買(human trafficking)와 인구 이동은 최근 학계에서 탐구되는 주제이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를 고찰한 연구에 따르면, 마약과 함께 가장 수익성이 높은 거래품목은 ‘인간’으로, 노예 제도와 인신매매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존재했다.¹⁾ 유럽에서는 쉥겐 조약(Schengen Agreement) 국가들 사이에 자유로운 이동이 인신매매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가 있다.²⁾ 인신매매의 역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전근대 시기의 인신매매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며 한국사에서 국경 인근에서의 인신매매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과 아동이라는 점에서 조선후기 국경지대에서의 인신매매 사례 연구는 조청관계사를 넘어서 사회사·여성사에 하나의 유용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전근대 조선과 중국 사이 지역은 명확한 국경선 개념은 아니지만 중간적(between-ness) 또는 초변경적(超邊境的 transfrontier-ness)인 성격을 지닌 곳이었다.³⁾ 김선민(2010)은 19세기 말까지의 조선과 청 사이를 넓은 접경지대인 변경(frontier)이나 명확히 구분해 설정한 선을 뜻하는 국경(border)이 아닌 변경과 국경의 중간적 성격을 띤 ‘국경지대(borderland)’라고 정의하였다.⁴⁾ 본고에서는 함경도와 평안도, 특히 청나라와 인접한 지

1) Susan Tiano, “Human Trafficking,” *Borderline Slavery: Mexico, United States, and the Human Trade*, Moira Murphy-Aguilar Eds, Burlington, VT: Ashgate, 2012, pp. 32-38.

2) Cassandra E. DiRienzo, Jayoti Das, “Human Trafficking and Country Borders,”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Review*, 27(4), 2017, pp. 278-288.

3) Pamela K. Crossley, 1999,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47-50.

4) 김선민, 「청제국의 변경통치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미국학계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2010, 114~118쪽. ‘국경지대(borderland)’는 제레미 아델만(Jeremy Adelman)과 스테판 애론(Stephen Aron)이 제시한 개념으로, 변경과 국경 사이에 중간단계로 ‘국경지대’를 설정하고 ‘두 세력이 서로 경쟁하는 경계’로 정의한다. 이 사이의 공간이 변경에서 국경으로 변화하기 전 국경지대의 단계를 거치며, 변경과 국경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고 보았다. Jeremy Adelman and Stephen Aron, “From Borderlands to Borders: Empires, Nation-States, and the Peoples in between in North American Histo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4:3, June, 1999, p. 816. (김선민, 『인삼과 국경』, 32쪽 재인용)

역에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를 탐구하기 위해 조선과 청 사이 지역을 국경 지대라는 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과 명·청 사이 인구의 이동과 국경지대의 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전주여진 때 누르하치는 임진왜란 중에 영내에 와있던 조선인을 돌려보내 주었고, 월경한 採蔘人을 쇠환하는 교섭을 진행했다.⁵⁾ 누르하치는 두만강 일대의 동해여진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영역으로 들어간 와르카[瓦爾喀·兀良哈]를 쇠환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⁶⁾

명에서 청이 교체되는 시기에 명의 流民들이 조선으로 들어왔고,⁷⁾ 두 차례의 胡亂 때 조선에서 청으로 끌려간 被擄人과 도망쳐온 走回人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정묘호란 때 피로인 가운데 3만 2천여 명이 돌아왔으며, 병자호란 때 피로인 숫자는 어림잡아 최소 수만에서 50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⁸⁾

청 수립 후 제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국경과 경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 조선과 청이 인접한 지역에서 국경의 관리와 이를 넘나드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犯越이 중대한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북변 越境문제에 주목한 김혜자(1982)는 월경의 배경으로써 청의 封禁策과 無人地帶의 형성을 언급하고 백두산정계비 건립 후 조선이 청의 월경에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했다고 보았다.⁹⁾ 이화(2003)는 청이 入關 후 對朝鮮 정책이 강경책에서 유화책으로 변화했다고 파악했다.¹⁰⁾ 월경을 둘러싼 조청간

5) 장정수, 「16세기 말~17세기 초 조선과 建州女眞의 배후 교섭과 申忠一의 역할」, 『한국인물사연구』 25, 한국인물사연구회, 2016.

6) 김영진, 「入關(1644) 이전 清朝의 와르카 쇠환 요구와 조선의 대응」, 『역사문화연구』 86,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23.

7) 우경섭, 「1620~1627년 조선의 遼民 인식과 송환론」, 『동국사학』 74, 동국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2. 조선으로 이주한 명나라 계통의 유민에 대해서는 한승현, 「조선 후기 明 遺民 우대책과 濟南 王氏의 관직진출」, 『한국문화』 86,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

8) 김종원, 「初期朝淸關係에 대한 一考察: 丙子胡亂時의 被擄人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71, 역사학회, 1976 및 한명기, 「병자호란 시기 조선인 포로 문제에 대한 재론」, 『역사비평』 85, 역사비평사, 2008. 피로인의 송환과 이때의 청 체류 경험, 청에서 돌아온 여성의 이혼이 사회문제로 대두했던 현상 등을 다룬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박주, 「병자호란과 이혼」, 『조선사연구』 10, 조선사연구회, 2001; 이명현, 「환향녀 서사의 존재 양상과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60, 동아시아고대학회, 2020; 김일환, 「병자호란 贖還婦女들의 존재 지우기」, 『동방학』 84,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3; 박수밀, 「병자호란의 상흔과 청을 김상헌의 심양 억류 체험 고찰」, 『한국문화과예술』 31, 한국문화과예술연구소, 2019.

9) 김혜자, 「조선후기 북변월경문제 연구」, 『이대사원』 19,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82.

교섭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이화자(2008·2011)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경계로 확정됐으나 두만강의 수원이 명시되지 않아 19세기 말 영유권논쟁과 외교분쟁으로 이어졌다고 하였다.¹¹⁾ 김선민(2011·2016)은 조선과 청 사이가 모호한 국경지대에서 국경으로 변화하는 과정 및 이를 둘러싼 국경의 관리와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검토하였다.¹²⁾ 또 바다에서 발생한 표류·해양범월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졌다.¹³⁾

본고는 영조 대에 인신매매 관련 사건에서 조선과 청의 국경지대에서 청나라인과의 매매가 의심되거나 실제로 인신매매가 이루어졌던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과 청 사이에 이 지역에서 나는 인삼과 조피를 둘러싸고 이득을 취하려는 양자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조청간의 외교적 주요 현안이었던 범월 사건 속에서 국경지대에서의 인신매매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선시대 인신매매와 관련된 표현으로 사람을 불러들이고 피어내는 행위를 지칭하는 誘引이나 引誘, 誘致, 招引 등의 용어가 나타난다. 조선에서 인신매매 사건을 인지하고 이를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로 ‘초인’으로 표현된 인신매매 사건이 증가하자 숙종 대 이후 국왕의 受敎를 통해 이를

10) 이화, 「청의 중원입관 전후 조선인의 월경 문제를 둘러싼 조·청 교섭」, 『한국학보』 29-3, 일지사, 2003.

11) 이화자, 『조청국경문제연구』, 집문당, 2008; 이화자, 『한중국경사 연구』, 해안, 2011. 이화자의 연구 19세기 간도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평이 참조된다. 강석화, 「조청 국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화자, 『한중국경사 연구』(해안, 2011)에 대한 서평」, 『한국학연구』 2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12) 김선민, 「옹정-건륭연간 莽牛哨 사건과 청-조선 국경지대」, 『중국사연구』 71, 중국사학회, 2011; 김선민, 「18세기 후반 청-조선의 범월문제와 경계관리: 金順丁·朴厚贊 사건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김선민 저, 최대명 역, 『인삼과 국경: 청-조선의 영토 인식과 경계 형성』, 사계절, 2023. 이 밖에도 조청 사이의 국경과 범월의 외교사적 측면과 사안의 審理 과정을 다룬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정해중, 「청대 조선인과 청국인 범월의 특징: 양국 범월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6, 명청사학회, 2006. 王燕杰, 「清朝前期與朝鮮邊務交涉與合作研究: 以朝鮮人越境犯罪案件的審理爲中心」, 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13) 한임선·신명호, 「조선후기 海洋境界와 海禁」, 『동북아문화연구』 21,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9; 김문기, 「19세기 조선과 청의 어업분쟁: 1882년 ‘조청무역장정’ 체결 이전까지」, 「19세기 동북아 4개국의 도서 분쟁과 해양경계」, 동북아역사재단, 2008; 민덕기, 「동아시아 해금정책의 변화와 해양 경계에서의 분쟁」, 『한일관계사연구』 42, 한일관계사학회, 2012; 남이슬, 「강희연간 청국인의 해양범월과 조·청 양국의 대응」, 『명청사연구』 44, 명청사학회, 2015.

금지하기 시작했다.¹⁴⁾ 18세기 영조 초반에도 서울 경기의 사람들을 함경도와 평안도로 데려가 인신매매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제가 영조 때 편찬된 『續大典』에 수록되었다.¹⁵⁾

조선과 청 사이의 국경지대는 범월에 대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조선인과 청인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18세기 영조 때 간행된 『속대전』에 인신매매 금지 규정이 수록되었는데 이는 국경 인근 지역에서의 왕래를 통제 한 규제와 연동되어 있었다. 먼저 2장에서 조선 전기에 준용한 『大明律』에서 나타난 인신매매와 범월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후기에 『속대전』 단계에서 양자가 결합된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3장에서 국경지대에서 인신매매를 통한 이동 사례로서 1747년(영조 23) 범월죄인 삼례와 소업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들이 체포되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신매매 경로 및 조선과 청의 擬律 과정과 처벌의 실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시기 양국 간 국경 관리 체계가 작동하는 가운데 조선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 확대가 범월을 통제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나타났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2. 『續大典』의 서북지역 불법왕래 및 인신매매 금지 규제의 결합

1) 조선전기 『大明律』의 인신매매 및 關鎖 규제

조선 초 刑律은 『經國大典』 刑典 첫머리에 ‘用大明律’이라 명시하였듯이 『大明律』을 준용하였다. 『대명률』에 인신매매 범죄를 금지하는 규정은 형률에, 육상·해상을 둘러싼 경계를 함부로 넘나드는 것은 兵律에 나타난다.

사람을 유인해서 남에게 파는 것에 대해 『대명률』 형률 盜賊 「略人略賣人」조에 나타나는데, 사람을 유인하는 것을 略人, 유인한 사람을 판매하는

14) 류은아, 「조선 후기 인신매매 사건과 숙종대 함경도로의 인신매매 금지 규제」, 『법사학연구』 69, 한국법사학회, 2024a.

15) 류은아, 「18세기 초 서북지역 인신매매 사건과 법적 대응」, 『민족문화』 67, 한국고전번역원, 2024b.

것을 略賣라고 하였다. 『약인약매인』에서는 총 7개의 세부조목으로 규정하였다. ① 계략[方略]을 써서 良人을 誘取하거나 양인을 약매하여 노비가 되게 하면 형량은 杖 100, 流 3000리이고, 처첩이나 자손이 되게 하면 장 100, 徒 3년이다. 이 과정에서 다치게 하면 絞刑, 살해하면 斬刑이다. ② 거짓으로 유리걸식하는 아이를 데려다 기르거나[乞養]이나 양자로 삼는다고[過房] 칭하면서 양인의 자녀를 사서 팔면[轉賣], 첫째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한다. ③ 서로 동의하에 양인을 노비로 만들어 판 사람은 장 100, 도 3년, 처첩·자손이 되게 하면 장 90, 도 2년 반이다. 유인당한 피해자[被誘]와 아직 팔지 않은 자는 1등급을 감하며, 10세 이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노비를 약매 혹은 화유하면 양인을 유인한 것에 비해 1등급을 감한다. ⑤ 유인된 자가 친족인 경우 아들·손자이면 장 80, 아우·누이동생·姪孫·외손·자신의 첩·아들·손자의 부인은 장 80, 도 2년, 아들이나 손자의 첩은 2등급을 감하고, 同堂의 아우나 누이동생·당질·질손은 장 90 도 2년 반으로 한다. ⑥ 처를 팔아 婢가 되게 한 경우 장 100, 유 3천리이다. ⑦ 주모자나 구매자가 이 사실을 알고서 매매했다면 범인과 동일하게 논죄하고 중개인·보증인은 1등급을 감한다고 하였다.¹⁶⁾

『경국대전』에서 인신매매 관련 규제는 노비를 함부로 데려가서 부리거나 판매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남의 노비를 점유한 것은 仍執·據執이라고 하고, 노비를 훔쳐 파는 행위는 盜賣罪의 일환으로 취급해 남의 노비를 점유하거나 몰래 파는 행위를 규제하였다.¹⁷⁾

육상의 關門이나 해상의 津渡에서 허가 없이 통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대명률』 병률 「私越冒渡關津」·「私出外境及違禁下海」 등에 보인다. 「사월모도관진」은 육상과 해상의 경로에서의 私渡·越渡·冒渡를 금지한 것이었다. 私渡란 허가증인 文引 없이 지나는 것이고, 越渡는 정해진 關의 門·津의 渡·변경의 요새 외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며, 冒渡는 허가증은 있지만 남의 이름을 빌린 경우이다. 사도는 장 80, 율도는 장 90이고,

16) 『大明律直解』 권18 刑律 盜賊 제298조 「略人略賣人」

17) 조선 전기 인신매매 관련 규정과 관련 법적 논의는 류은아, 앞의 논문, 2024a, 53~60쪽을 참조.

변경에서의 월도는 장 100, 도 3년이며, 변경 바깥으로 나갔으면 絞刑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다. 해당 검문을 맡은 守把나 軍兵도 처벌하여 고의로 묵인하면 같은 죄이고 검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등급을 줄이며 당일 근무자를 처벌한다. 모도는 장 80, 집안사람끼리 사칭하면 家長을 처벌하며, 파수가 실정을 알았으면 같은 죄이지만 몰랐으면 처벌하지 않았다.¹⁸⁾

육상과 해상을 통해 물화나 인구를 유출하는 행위의 규제는 『대명률』 「私出外境及違禁下海」에 나타난다. 「사출외경금위금하해」조는 말과 소, 군수 물자로 쓸 수 있는 철기[軍需鐵貨], 銅錢, 각종 비단이나 생사[段疋·紬絹·絲綿]를 가지고 사적으로 육상이나 해상의 경계 너머로 유출하거나 팔면 장 100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짊어지거나 가축·수레·배로 운반한 사람은 1등급을 감하며, 적발된 물화와 이동수단 모두 관에 들이고 10분의 3은 신고자에게 포상으로 지급한다. 특히 사람[人口]¹⁹⁾을 데리고 가거나 軍器를 가지고 육로·해로로 나갔을 경우 絞刑이고, 이 과정에서 사정을 누설하면 斬刑으로 더 무겁게 처벌했다. 담당 官司나 파수가 내통해 몰래 숨겨 나 가거나, 고의로 묵인해주면 같은 죄로 하였다. 알지 못했다면 임무를 소홀히 한 죄로 등급을 줄여 처벌하였다.²⁰⁾

조선 전기에 인신매매 규제인 「약인약매인」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드물게 보인다.²¹⁾ 「사출외경금위금하해」의 경우 세종 때 경상도 관찰사가 일본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삼포(三浦)에서 해당 조문에 따른 관리를 주장해 그대로 시행되었다.²²⁾ 성종 때 臨江의 獐子島에서 水牛를 잡다가 표류해 명나라 경계에서 붙잡힌 잡힌 사례와²³⁾ 함경도 회령 사람이 兀良哈 등에게 군기 등을 판 사례에서 해당 율로 논의하였다.²⁴⁾

18) 『대명률직해』 권15 兵律 關津 제241조 「私越冒渡關津」

19) 人口는 良人과 賤人을 아우르는 말로 양인을 가리키는 人과 奴婢를 가리키는 物을 세는 단위인 口口를 합친 것이다.

20) 『대명률직해』 권15 兵律 關津 제246조 「私出外境及違禁下海」

21) 『세종실록』 세종 6년(1424) 9월 7일(己卯)

22) 『세종실록』 세종 22년(1440) 5월 26일(丁卯)

23) 『성종실록』 성종 18년(1487) 11월 30일(乙丑)

24) 『성종실록』 성종 20년(1489) 4월 12일(庚子)

2) 조선후기『續大典』인신매매와 범월 규제의 결합

17세기 인신매매하는 사건이 인조 시기 이래로 보고되었다. ‘人物招引’이라고 불리는 인신매매는 17~18세기 초 서울과 경기 지역의 양인이나 노비를 유인해서 함경도로 이동해 판매했다. 이를 금지하는 수교가 있었으나 18세기 영조 초반에도 평안도로 데리고 가서 인신매매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²⁵⁾

평안도와 함경도는 조선과 청의 경계인 압록강과 두만강 인근으로 兩界 혹은 서북지역으로 지칭되는 지역이다. 구체적으로는 평안도는 江邊七邑이라고 하여 압록강 연안의 의주·강계·초산·창성·삭주·위원·벽동, 함경도는 六鎭으로 불리는 동북쪽의 경흥·경원·온성·종성·회령·부령 일대이다.²⁶⁾ 이들 지역에서 범월이 발생한 까닭이 지역적으로 청과 매우 가까웠기 때문이었음은²⁷⁾ 주지의 사실이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는 조선과 청 사이 국경지대에서 일어나는 범월 문제가 현안으로 자리한 시기였다. 17세기 말 숙종시기에 두만강과 압록강 중상류 일대가 개발되고 인구가 증가한 것도 범월과 조선인과 청인 사이의 충돌이 잦아진 한 원인이다.²⁸⁾

1685년(숙종 11, 강희 24) 청나라 영내에서 인삼을 캐던 조선인이 청의 관원을 공격한 三道溝 사건이 발생했고,²⁹⁾ 이듬해인 1686년(숙종 12, 丙寅) 범월을 금하는 수교가 내려졌다. 서북의 沿邊에서 청나라 변경[彼邊]으로 넘어간 자는 월경 목적이 인삼 채취 혹은 사냥, 그 외의 일 등을 논하지 않고, 수범과 종범을 가리지 않고 모두 경계 인근에서 호시한다는 강력한 처벌을 명시한 것이었다. 이 내용이 『受教輯錄』과 『典錄通考』에 ‘丙寅禁蔘事目’으

25) 류은아, 앞의 논문, 2024b, 138~147쪽.

26) 평안도와 함경도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조선후기에 파수(把守)를 설치해 방어 및 범월을 단속했다. 해당 연구로 강석화의 연구가 있다. 강석화, 「조선후기 평안도지역 압록강변의 방어체계」, 『한국문화』 3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4;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 육진지역의 방어체계」,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27) 『승정원일기』 1669년(현종 10) 11월 19일(乙巳) “穩城爲邑, 最近彼境, 故曾前亦有犯越生事之患.”

28) 변주승, 「조선후기 유민의 북방 변경 유입과 그 실태」, 『국학연구』 13, 한국국학진흥원, 2008, 198쪽.

29) 삼도구 사건에 대해서는 이화자, 앞의 책, 91~108쪽 및 김성희, 「조선 숙종의 군신외리 정립과 존주대의」,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70~81쪽 참조.

로 수록되어³⁰⁾ 범월죄인을 처벌하는 준거가 되었다.³¹⁾

1689년(숙종 15)에 내려진 함경도로의 인물초인 금지 수교는 함경도 사람들이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에 와서 양인이나 노비를 초인해 함경도로 데려간 주범은 데려간 숫자를 막론하고 효시하며, 이를 숨겨주고 거주사실을 묵인한 자도 함께 사형으로 처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지역의 관리는 이들을 원래 살던 지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며 평안도와 함경도 사이 왕래하는 인구와 말을 행장의 숫자와 대조하도록 했다. 서북으로 가는 주요 길목에서 인구나 물자를 데리고 가는 증명서의 발급 및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인신매매를 포함한 허가되지 않은 인원의 이동을 제한한 것이다.³²⁾ 1718년(숙종 44)에 문서의 위조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였고,³³⁾ 1730년(영조 6)의 위의 수교들을 재확인하였다.³⁴⁾ 즉 18세기 초 청나라의 변경으로 넘어간 자나 인신매매해서 함경도 등지로 데려간 자는 이유나 숫자를 막론하고 양자 모두 사형으로 처결한다는 것이다.

18세기 무렵 조선에서는 타 지역의 인신을 유인·납치해서 혹은 원거리를 이동해 조선과 청 국경과 가까운 지역으로까지 와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자국민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청나라인[彼人]³⁵⁾

30) 『受教輯錄』 刑典 禁制 康熙丙寅禁誘事目:『典錄通考』 刑典 禁制 受教輯錄 康熙丙寅禁誘事目

31) 『승정원일기』 숙종 14년(1688) 3월 7일(庚辰); 『승정원일기』 숙종 30년(1704) 7월 15일(癸丑): 『승정원일기』 숙종 33년(1707) 8월 2일(辛巳)

32) 『受教輯錄』 刑典 「禁制」 北道人, 招引人物, 已爲入居者, 現出, 刷還原籍官, 而或隱漏現發, 則守令拿問定罪, 隱匿者, 論以一罪. 幼稚被誘, 不知其父母及本主者, 屬公. ○ 招引人物者, 勿論口數多少, 一併境上臬示. ○ 自北道往來平安道時, 行狀所付人口·馬匹點考, 還歸時, 亦爲點見憑准而爲他道之事, 不爲着實舉行, 終至現發, 則當該地方官, 拿問定罪, 犯人, 論以一罪. [康熙己巳承傳]

33) 『新補受教輯錄』 刑典 「禁制」 京外良民及流丐·公私賤之類, 百般欺騙, 率去北路, 而僞成券狀, 任自賣買, 依律定罪. [依受教, 一罪論斷.] ○ 當該守令·郵官, 亦爲論罪. [依大明律制書有違, 杖一百. ○ 康熙戊戌承傳.]

34) 『新補受教輯錄』 刑典 私賤 1296. “北路人, 招引京奴婢者, 不待時, 境上臬示, 幼稚不知其父母及本主者, 屬公外, 及招引現發後, 以歇價買來, 圖免其罪者, 亦用臬示之律, 其婢子, 屬公於各堡. 京中人, 與北路人符同, 招引以給者, 亦爲隨現同律. 掌隸院書吏, 符同京·外人, 僞成文記, 官斜以給者, 論以極律. [雍正庚戌承傳]”

35) 조선측 사료에 청나라 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彼人·胡人 등이 보이며 『동문회고』에서는 조선으로 범월해온 이들을 上國人으로 지칭했다. 김준영(2024)은 조선의 외교문서에 등장하는 청국인[혹은 上國人]은 八旗에 포함된 만주인[滿洲 蒙古 漢軍旗人]과 팔기에 속하지 않은 漢族 출신의 민인을 포괄해서 지칭한다고 하였다. 김준영, 「이상과 현실: 청대 琿春의 도시 형성과 조선인 사

과의 거래가 의심되면서 조정 내에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1733년(영조 9) 5월 서북 사람들이 서울 사람을 유인해 육로나 해로를 이용해 데려가는 일이 많다는 소문이 퍼지자 포도청에서 군관을 파견해 관련자 10명을 체포했다.³⁶⁾ 포도대장 張鵬翼은 서북에서 온 사람이 서울 사대부 집안의 여종이나 양인 여성을 유인해 변방의 벽지로 보내거나 압록강변으로 이동해 청인에게 팔고 있다는 보고를 올렸다.³⁷⁾ 다음 달인 6월 형조판서 李眞淳 또한 서북인이 서울 안에 거주하는 노비를 사서 청나라인에게 팔아넘기는 일로 포도청에서 형조로 이송해온 숫자가 많다고 아뢰었다.³⁸⁾

이듬해인 1734년에도 평안도의 인신매매 범죄가 나타나며,³⁹⁾ 6월 평안감사 朴師洙는 청과의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인신 거래의 처리방안에 대한 장계를 올렸다.⁴⁰⁾ 이 사건은 평안도 위원에 거주하는 金潤亨 등이 서울에 사는 양인 여성 二禮를 초인한 사건으로 누구에게 팔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박사수는 이들을 청인[胡人]과 매매한 것으로 단정해 사형시키는 것은 지나치며,⁴¹⁾ 압록강 연안 강변칠읍의 초인죄인은 사형으로 처벌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형조판서 尹陽來는 박사수의 의견에 반대해 서북지방으로 인물을 초인하는 폐단이 이미 심각한 상황이므로 엄한 형률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 결과 김윤형을 수교대로 국경 근처에서 효시하고 매매되었던 이례는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냈다.⁴²⁾

회, 『동양사학연구』 166, 동양사학회, 2024 참조.

36) 『승정원일기』 영조 9년(1733) 5월 1일(辛巳): 이 절에서 다루는 1733년 5월부터 1734년 박사수의 장계에서 논의한 인신매매 사건은 다음을 참조. 류은아, 앞의 논문, 2024b, 147~155쪽.

37) 『승정원일기』 영조 9년(1733) 5월 12일(壬辰) “鵬翼曰(…) 又曰, 人物招引, 法令至嚴, 而近來西北之人, 無數上來. 士夫家使喚婢子及良家女子, 誘引以去, 或捧重價, 放賣於邊方深僻處, 或送于江邊, 賣與彼人. 如此之類, 不知其數, 而即今見捉於臣者, 亦多, 故今方推覈.”

38) 『승정원일기』 영조 9년(1733) 6월 5일(甲寅)

39) 『승정원일기』 영조 10년(1734) 3월 3일(己卯): 『영조실록』 영조 10년 3월 3일(己卯): 『승정원일기』 영조 10년(1734) 5월 3일(戊寅)

40) 『추관지』 권10 掌隸部 私賤 買賣奴婢 「西北人物招引」; 『特敎定式』各司稟定 「招引人物入西北」 [영조 10년(1734)]

41) 『영조실록』 영조 10년(1734) 6월 14일(戊午)

42) 『승정원일기』 영조 10년(1734) 7월 5일(戊寅)

1746년(영조 23) 간행된 『속대전』 刑典 禁制는 『경국대전』에 비해 조선과 청 사이의 불법 채삼이나 潛商, 청인과의 장물 거래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다수 수록하고 있다.⁴³⁾ ‘海浪島往來者’ 이하에 바다와 섬 · 北路와 西路를 허가 없이 왕래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과 함께 인물을 초인하여 양계로 들어가는 자를 사형으로 논한다는 법제를 정식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海浪島에 왕래하는 자 [관소 · 요새를 몰래 넘어 경계 밖으로 나간 을 [越度關塞 因而出外境律]에 의거한다.] · **北路에서 西關으로 行狀없이 왕래하는 자** [巡營에서 행장을 만들어 주고 데리고 가는 人口와 馬匹을 기록하여 말을 거기에 기록하여 증빙으로 삼는다. ○ 행장이 없는 것이 발각되면 지방관은 체포해 심문하고 죄를 준다.] · **인물을 招引해 兩界로 데려간 자** [인구의 다소를 막론하고] **모두 一律 (사형)로 논한다.**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자는 原籍官으로 쇄환하며, 은닉했다 적발된 자는 초인과 같은 죄이다. 이 사실을 검거하지 못한 수령은 잡아들여 처벌한다. 어린 아이가 被誘되어 부모나 주인을 알지 못하면 屬公한다.] **양계의 인물을 초인해 매매한 자는 次律로 논한다.** [양계 변방의 백성이 도망쳐 내지로 이주한 경우 刑推해 원적관으로 쇄환한다. 인접해 사는 것을 묵인한 자는 장 1백, 유 3,000리이다.] **변방 백성이 도망해 彼地[청나라]로 갔는데 수령이 숨기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罷黜한다.** 面任 · 里任 등은 장 100, 유 3,000리이다.⁴⁴⁾

여기서 해랑도는 중국과 조선 사이 바다에 있는 섬으로⁴⁵⁾ 해상을 넘나드

43) 『續大典』 刑典 禁制 ‘交通清人和賣贓物’ 犯越探蓼佃獵者 ‘平安道江邊七邑’ ‘海浪島往來者’

44) 『속대전』 형전 금제 “無行狀現發, 則地方官拿問定罪. 招引人物, 入去兩界者 [勿論人口多少] 竝以一律論. [已入去者, 刷還原籍官, 而如有隱匿現發者, 與招引同罪. 不檢舉守令, 拿處. 幼稚被誘, 不知父母 · 本主者, 屬公.] 兩界人物, 招引賣買者, 以次律論. [兩界邊民逃移內地者, 刑推, 刷還原籍官. 許接人, 杖一百流三千里.] 邊民亡入彼地而守令匿不以報者, 罷黜. 面 · 里任等, 杖一百流三千里.”

45) 『燃藜室記述』 별집 권17권 邊輿典故 「海浪島」: 조선시대 해랑도는 중국과의 사이에 있었던 섬으로 보이나 그 정확한 위치가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서인범, 「조선시대 서해 북단 해역의 경계와 島嶼 문제: 海浪島와 薪島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36, 명청사학회, 2011, 359~367쪽 참조.

는 자나 육로로 북로에서 서관으로 통행중[行狀] 없이 왕래하는 자, 인물을 초인해 서북의 양계로 들어간 자는 숫자를 불문하고 위 세 유형의 범죄인을 모두 사형으로 논한다는 내용이다. 변방의 백성이 도주해 국경 너머의 청나라의 경내에 거주한 사실을 인근의 수령과 면·이임이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벌하였다.⁴⁶⁾

또 刑典「私賤」에는 어린 아동을 유인해 노비로 삼는 것도 규제해 어린이를 유인하고서 숨겨두고 장성하기를 기다렸다가 노비로 삼은 자는 장 100, 유 3,000리의 형률을 규정했다. 북도의 宮屬人·토호·품관이 함께 거주하는 비부·고공 외에 양인을 점유하고 부리는 이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아는 색리·면이임·거린도 모두 같은 율로 하였다.⁴⁷⁾

조선 전기에『대명률』에 별도로 규정되었던 인신매매와 변경에서의 통행 범월 규제가『속대전』에 오면 양자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허가없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재화나 인원 외의 사람을 데리고 이동하는 것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국경지역에서 인신매매를 인지하고 규제하려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초반 조청 접경지대에서 조선인과 청나라인이 서로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난다.⁴⁸⁾ 이 과정에서 국경을 넘는 인신매매가 적발된 사례로 1747년 소업·삼례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46) 『속대전』 형전「禁制」“無行狀現發，則地方官拿問定罪。·招引人物，入去兩界者【勿論人口多少】竝以一律論。【已入去者，刷還原籍官，而如有隱匿現發者，與招引同罪。不檢舉守令，拿處。幼稚被誘，不知父母·本主者，屬公。】兩界人物，招引賣買者，以次律論。【兩界邊民逃移內地者，刑推，刷還原籍官。許接人，杖一百流三千里。】邊民亡入彼地而守令匿不以報者，罷黜。面·里任等，杖一百流三千里。”

47) 『속대전』 刑典「私賤」“誘匿兒童待壯爲奴婢者，杖一百流三千里。管領·切隣知而不告者，減一等。不報官吏，重推。【北道宮屬人及土豪·品官同居婢夫·雇工外，冒占良人，容隱役使者，以制書有違律論，三人以上，杖一百徒三年。知情色吏·面·里任·切隣同律，宮屬人犯此罪，則內需司別差，罷黜，竝勿揀赦前。】

48) 17~18세기 범월 연구 가운데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범월 사건에 대해서는 이욱(2005), 영조 연간의 범월 사안을 외교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정리한 임현채(2017)의 논문 등이 있다. 이욱, 「17~18세기 범월사건을 통해 본 함경도 주민의 경제생활」, 『한국사학보』 20, 고려사학회, 2005; 임현채, 「영조대 조선인 범월사건 처리방침을 통해 본 조선의 對淸 태도」, 『명청사연구』 48, 명청사학회, 2017.

3. 1747년(영조 23) 犯越 · 인신매매 사건과 처리

1) 1747년 범월 삼례 · 소업 사건 조사에서 드러난 인신매매

1747년 청나라 영내에서 붙잡힌 조선 여인들에 대한 咨文이 도착했다. 이 사건은 『同文彙考』 및 『승정원일기』 등에 나타나며 조사 과정에서 소업과 삼례가 인신매매되어 국경을 넘었음이 확인된다. 해당 사안의 처리와 조사, 擬律 과정을 살펴보겠다.⁴⁹⁾

1747년(영조 23, 건륭 12) 11월 21일 청의 盛京禮部에서 두만강 하류의 바닷가 南海 登登磯 지역에서 조선 여인 2명과 조선 여인들을 숨겨준 남자 3명을 체포했다고 알려왔다.⁵⁰⁾ 조선 여인의 이름은 沙嗎尼 · 邵外彬으로 이들은 청의 영내에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었다. 청은 이들을 불법적으로 넘어와 겨울을 보내면서 인삼을 채취한 혐의로 체포해 구금해 둔 상태라는 것이었다. 붙잡힌 남자 3명은 만주인의 奴로 삼고⁵¹⁾ 조선 여인들은 조선으로 보내어 처리하며 소생의 자녀들은 그 아비에게 주어 양육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지 조선에 의견을 물어왔다.

이에 따라 조선 조정에서 조선 여인들의 조율 방안과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논의했다. 11월 25일 논의를 보면 조선 여인 2명이 남편이 있고 4명의

49) 조선과 청 사이에 咨文을 왕래할 때 자문을 가지고 가는 사행을 齎咨行이라고 하며, 이 때 譯官이 齎咨官을 맡았다. 신세완(2022)에 따르면, 조선후기에 184건의 제자행 파견이 있었으며 그 중 표류와 범월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신세완, 「조선후기 齎咨官의 사행 활동과 변화 양상」, 『지역과 역사』 50, 부경역사연구소, 2022.

50) 『동문회고』 原編 권56 【丁卯】 盛京禮部知會北道犯越人順付憲書咨官咨: 임현채(2017)는 건륭제 재위기간 동안 청에 보고된 조선인의 범월 판례는 10건으로 표 안에 이 사건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임현채, 앞의 논문, 2017, 519~520쪽.

51) 체포된 3명의 남성은 만주인의 奴로 삼았다는 것으로 보아 漢人으로 추정된다. 김준영(2024)의 연구에 따르면, 1714년(강희 53) 琿春에 駐防 八旗가 설치되었고, 이 일대를 경작할 노동자로 한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1740년(건륭 5)에 만주지역에 한인의 이주를 금지하는 봉금정책을 실시했으나 동시에 한인의 유입이 본격화되었다고 본다. 농업 노동자로 유입된 한인들 가운데 도망쳐 조선과 청 사이 지역에서 인삼을 채취해 이득을 취하자 만주인들은 이들을 적발해 규제했다. 김준영, 앞의 논문, 2024. 훈춘 등 길림 지역의 토지 개간 및 인삼채취 대해서는 김선민(2018, 2023a, 2023b) 등의 연구 등을 참조. 김선민, 「18세기 후반 훈춘 협령의 지역관리와 인삼행정」, 『사충』 93, 고려대 역사연구소, 2018; 김선민, 「청대 만주의 봉금과 개발」, 『생태환경과 역사』 10, 한국생태환경사학회, 2023a; 김선민, 「청대 길림지역의 기인과 토지 개간」, 『사충』 110, 고려대 역사연구소, 2023b.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어 귀속과 처리에 고심했다.⁵²⁾ 11월 28일에 관서에서 올라온 장계를 보면, 인신매매범이 강제로 18명을 초인해서 16인은 北道에 팔고 2인은 청나라인[彼人]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범인은 이운길[李雲吉·李云吉]이란 자로 현재 뒤쫓고 있는 중이었다.⁵³⁾

12월 10일 영조는 조선 여인들이 송환되면 중률을 쓰지 말라고 당부했다.⁵⁴⁾ 12월 보고를 보면 조선 여인 2명이 심양에서 조선의 영역으로 들어와 먼저 평안감영에 머무르며 심문이 진행되고 있었다.⁵⁵⁾ 심문 결과 이들의 이름은 사마니는 삼례[參禮·三禮], 소외빈은 小業이며, 이들을 다시 서울로 이송해 17일 오후 형조에 도착했다.⁵⁶⁾ 조사 결과 두 여인은 모두 함경도 경흥의 여종[婢]으로 남의 핍과 협박을 받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 紅旗街를 거쳐 등등기에 들어가 남해의 섬 가운데서 14년을 살았다. 자녀를 낳아 기르다가 청의 巡兵에게 붙잡혔고, 寧古塔을 경유하여 船廠으로 보내졌다가 瀋陽으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았다.⁵⁷⁾

조선에서는 삼례와 소업을 조사하고 이를 정리해 1748년 1월 성경 예부에 올린 삼례[沙嗎尼]와 소업[邵外彬]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沙嗎尼가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동향인에게 거두어 길러졌고, 혼인해 남편과 살았으나 그가 외부에 나가 오래 혼자 지내던 중 **한밤중에 같은 읍에 살던 이름 모르는 자가 함경도의 布商 金氏와 함께 들이닥쳐 저를 납치했습니다.** 해변에 도착해 배를 타고 함경도 경흥 지역에 이른 후,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 10년 동안 부려지다가** 남편을 얻어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경흥 사람 李云吉이 저와 邵外彬을 불러서 고향에 돌려보내준다고 속여서 배를 타고 登登**

52) 『승정원일기』 영조 23년(1747) 11월 25일(辛亥); 11월 26일(壬子)

53) 『비변사등록』 1747년(영조 23) 11월 28일(甲寅)

54) 『승정원일기』 1747년(영조 23) 12월 10일(丙寅)

55) 『승정원일기』 1747년(영조 23) 12월 12일(戊辰)

56) 『승정원일기』 1747년(영조 23) 12월 17일(癸酉)

57) 『영조실록』 1747년(영조 23) 12월 18일(甲戌)

磯島에 이르렀는데, 섬사람인 李活年에게 팔려 시집간 후 초막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해삼 채취를 업으로 삼았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올해 열두 살입니다. 이환년이 사망한 후에 다시 盛京 사람 劉包辰을 (남편으로) 얻어 5년 동안 살다가 청의 군병에게 붙잡혔습니다.

邵外彬이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

저는 본래 서울에 살던 백성으로[王城民]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사람들에게 희유와 협박을 받아 함경도 경흥에 이르렀고, 官奴 尙白에게 팔려 노비가 되어 10여 년 동안 부려졌습니다. 매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데, 이운길이가 속이며 말하길,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내가 돌아가는 배를 얻어서 널 태우고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즉시 가서 배를 탔는데 동등기도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王新農과 결혼하여 초막을 짓고 살면서 아들 두 명을 낳았습니다. 왕신농은 군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겁먹고 도주했습니다. 저는 섬에 남아서 재차 王彦老에게 시집가서 다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올해[1747년] 2월 관군에게 잡혔고 이 밖에 다른 죄상은 없습니다.⁵⁸⁾

위 진술에 따르면, 삼례는 경상도에 살던 남편이 있는 여성으로 한밤중에 포상 김씨가 집에 들이닥쳐 납치당했다.⁵⁹⁾ 삼례는 배를 타고 함경도 경흥에 도착해 10년 동안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일했고 여기서 남편을 얻었

58) 『동문회고』 原編 권56 「越界女人查問島配客戊辰」 “沙嗎尼供稱. 俺本慶尚道民女, 生而父母俱沒, 同鄉人率養. 嫁夫居生, 俺夫出外, 女身獨宿. 深夜, 同邑居名不知人率咸鏡道布商金姓人, 突入掠去. 走至海邊乘船, 至咸鏡道慶興地, 上項金姓人家十年使役, 得夫居生. 夫死後, 慶興人李云吉, 招引俺與邵外彬, 誑以還歸本鄉, 乘船到登登磯島, 斥賣於島中人李活年, 仍與交嫁, 結幕幕居生. 採海蔘爲業, 生一女, 年今十二歲. 活年死後, 又得盛京人劉包辰, 同居五年, 被捉於捕卒. 邵外彬供稱. 本以王城民女, 幼失父母, 被人誘脅, 至慶興府, 斥賣於官奴尙白處爲婢, 役使十餘年. 每欲還歸故土, 本府人李云吉, 誑誘俺曰, 你欲還歸, 我得順歸船, 載你而去. 俺信聽其言, 隨往乘船, 轉到登登磯島. 交嫁王新農, 結幕居住, 生產二子. 王新農聞捕卒出來, 驚慄逃走, 俺留本島, 復嫁王彦老, 又生二子. 本年二月被捉於官軍. 此外無他情犯. 等因.”

59) 남편이 있었으나 혼자 살고 있다가 한밤에 납치되었다는 삼례의 사례는 조선시대 민간 관행으로 알려진 ‘보쌈’과 유사해 보인다. 김백철(2021)은 ‘과부보쌈’ 과정에서 사기행각이 나타나는 점과 당사자인 과부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낭만적이거나 당시 널리 행해진 관습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김백철, 「19세기 과부약탈 사건의 재검토: 관습인가 범죄인가」, 『동아시아고대학』 64, 동아시아고대학회, 2021.

다. 남편이 사망한 후 어느 날 이운길이 와서 고향에 돌려보내주겠다고 하자 그 말을 믿고 배를 탔는데 고향이 아닌 등등기란 섬에 도착한 것이다. 섬에서는 이활년에게 다시금 매매되어 같이 초막을 짓고 살면서 낳은 딸이 12세가 되었다. 이활년이 사망하자 성정 사람인 유포장과 5년 동안 살다가 붙잡혔다는 사연이었다. 삼례는 오랜 세월동안 김씨, 이활년, 유포장 세 명에게 매매되어 국경지대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소업은 부모를 잃은 고아로 유인당해 함경도 경흥에서 도착했고 여기서 관노 상백의 노비로 10여 년 동안 일했다. 이운길이 와서 고향에 데려다준다는 말에 속아서 배를 탔더니 등등기에 도착했고 도망칠 수 없는 섬이었기에 체념하고 왕신농과 살았다. 청의 군병이 왔을 때 왕신농이 도주하자 다시금 왕언노와 함께 살며 아들 둘을 낳았던 중에 체포되었다. 소업과 삼례는 명백한 인신매매 사례로 첫 매매에서 함경도 경흥으로 갔다가 또다시 이운길에게 속아서 바다 한 가운데 섬인 등등기에 도착했으며 청나라 인에게 아내로 수차례 팔리며 자녀를 낳고 살고 있었던 것이다.

2) 인신매매범 이운길과 피해자 삼례·소업에 대한 조·청간 擬律

이듬해 1748년 1월 10일에 비국당상 김재로는 초인범죄인들 모두를 잡지는 못했으나 이운길은 체포한 상태이며 청에 정범 이운길은 사형[正法], 삼례와 소업은 피해자이므로 사형에서 감해 섬에 배속하는 減死島配로 回咨 하겠다는 안을 올렸고, 영조가 이를 윤허했다.⁶⁰⁾ 김재로의 안대로 조선에서는 이운길은 여인을 찢어 협박하고 경계를 넘어 관 수범으로 올에 따라 참형에 처하고 여인들의 범월은 실상 사기와 협박에 의한 것이므로 감형해 섬에 정배하는 안을 청에 아뢰었다. 조선과 청 禮部 사이 2월 27일과⁶¹⁾ 5월 21일자문이 오갔고,⁶²⁾ 30일에 청 예부는 해당 안건이 刑部에 속하므로 이를 형

60) 『영조실록』 영조 24년(1748) 1월 10일(乙未); 『승정원일기』 영조 24년(1748) 1월 10일(乙未)

61) 『동문회고』 原編 권56 「越界女人查問及買馬人擬罪咨[互犯禁]」

62) 『동문회고』 原編 권56 「禮部頒賞咨官咨」

부에 보내겠다고 답했다.⁶³⁾

7월에 청은 이운길을 여인을 유인해 판매한 죄로 絞監候하여 秋審 이후에 처결할 것이며 나이와 籍貫 장부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추가로 요청했다.⁶⁴⁾ 또 청은 8월에 이운길을 참형에서 교형으로 바꾸고 가을 이후 처결하겠다고[秋後處決] 알려졌다.⁶⁵⁾ 청에서 형벌의 확정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立決과 監候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입결은 즉시 처형으로 凌遲立決 · 斬立決 · 絞立決 등이 있으며, 감후는 일단 가을에 있는 秋審 때 다시 심리한다는 것으로 斬監候 · 絞監候 등으로 분류한다. 추심 후에 사형을 집행하는 情實, 형의 집행을 다시금 유예하는 緩決, 형을 감경할 사정이 있어 유배나 다른 형벌로 낮출 수 있는 可矜 등으로 처결했다.⁶⁶⁾

소업과 삼례의 형량에 대해서는 7월에 도착한 청의 자문에서는 도주한 사람의 경우 장 70, 徒 1년 반이란 형량에서 한 등급을 더해 장 80, 도 2년으로 알려졌다가,⁶⁷⁾ 1748년 8월 최종적으로 婦人임을 감안해 收贖으로 형을 확정해 조선에 보냈다.⁶⁸⁾

조선에서는 체포한 이운길을 2년 동안 가두고 형신과 심문을 진행했다. 1749년 7월 함경감사 鄭益河의 장계에 이운길을 비롯해 그의 동생인 李雲京, 그리고 金夏澄 · 全繼雲 · 全水萬 등이 3년째 옥에 갇혀있다고 전 감사 李宗城이 작년에 올린 계본을 들어 처결을 매듭지어주길 요청했다.⁶⁹⁾ 여기서 인신매매를 주도한 이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이 제시되었는데, 삼례를 청나라 인에게 交嫁시킨 것은 그의 아버지 後元이며, 운길 또한 이

63) 『동문회고』 原編 권56 「禮部知會本國查案交刑部覆勘及齊咨官先遣回國咨」

64) 『동문회고』 原編 권56 「禮部知會首犯擬絞查報年貌籍貫咨」

65) 『동문회고』 原編 권56 「年貌籍貫咨」 “朝鮮國王, 爲 咨覆 事. 本年八月十二日, 承准貴部咨. (...) 據此, 除將該犯李云吉 改擬絞監候, 秋後處決, 將該犯年歲, 籍貫開錄咨報. 沙嗎尼, 邵外彬 改擬杖八十, 徒二年, 係婦人照例收贖, 嚴行管束. 等因.”

66) 청의 秋審제도에 대해서는 李嵐, 2008, 「清代的秋審制度」, 『清史鏡鑑』 第1輯 및 17세기 강희연 간 沂州府 郟城縣의 知縣 등을 역임한 黃六鴻의 관감서 『福惠全書』 「刑名部」 참조. 黃六鴻 저, 김형중 역, 『북해전서』 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0, 72~75쪽.

67) 『동문회고』 原編 권56 「禮部知會首犯擬絞查報年貌籍貫咨」

68) 『동문회고』 原編 권56 「年貌籍貫咨」

69) 『승정원일기』 영조 25년(1749) 7월 17일(癸亥)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았고, 윤길의 동생 윤경은 14세에 불과해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수만과 全繼雲은 인물을 초인한 것으로 범월 사안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때 병조참판 조영국은 당시에 평안감사 직임에 있으면서⁷⁰⁾ 삼례를 직접 심문했었는데, 이윤길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유인한 것이라며 그의 죄가 크다고 강조했다. 영조는 이윤길은 전과 같이 가두어 형신하고, 윤경은 석방, 김하징 · 전수만 · 전계운은 島配하라고 명하였다.

사안이 마무리되어갈 무렵 이윤길을 ‘緩結’로 처리하라는 청의 자문이 지속적으로 도착했다. 1749년 10월 도착한 청의 자문은 이윤길에 대해 범월 및 여인을 속여 판 율에 따라 참형을 내렸던 것을 황제가 관대하게 ‘완결’로 처결한다는 것이었다.⁷¹⁾ 이 ‘완결’이 정확히 어떤 처분을 의미하는지 조선 조정에서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⁷²⁾ 이전인 1739년 金時宗 범월사건 때에도 완결로 한다는 청의 자문이 있었으나 김재로는 완결이 斬刑의 다음 등급인 絞刑이 아니라 기한을 늦추고 처결을 기다리라는 뜻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한 전례가 있다. 이 때 이미 김시종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이를 숨기고 자문대로 거행했다고 청에 숨겼던 전례가 있었다.⁷³⁾

70) 조영국이 평안감사로 재직할 기록은 『영조실록』 영조 23년(1747) 5월 29일(戊午) 등에 보인다.

71) 『동문회고』 原編 권56「原咨」, “刑部題一起爲請旨事絞犯李云吉, 該臣等會看得. (...) 李云吉應緩決. 等因.”; 『동문회고』 原編 권56「回咨」, “朝鮮國王, 爲 咨覆 事. 乾隆十四年十月十七日, 准貴部咨開. 刑部咨稱. 云云. 自刑科抄出, 止欽遵可也. 見禮部粘移緩決咨.”

72) 『승정원일기』 영조 25년(1749) 12월 3일(丁丑): 『비변사등록』 영조 25년 12월 6일; 이를 받은 조선은 일단 관대한 처분에 감사를 표하는 회자를 보냈고, 동일한 내용의 회자가 이듬해 2월과 10월에 이르렀다. 조선은 11월 사은표문과 12월에 회자를 발송했으며, 사은표문은 이듬해인 1751년 건륭제에게까지 전달되었다. 『동문회고』 원편 권56「回咨」, “朝鮮國王, 爲 咨覆 事. 乾隆十四年十月十七日, 准貴部咨開. 刑部咨稱. 云云. 自刑科抄出, 止欽遵可也. 見禮部粘移緩決咨. (...) 旋蒙皇旨, 改減律名, 實出於皇朝寬大之鴻恩. 而今又特下着監候緩決之旨, 欽恤之仁, 與天同大. (...)”; 『동문회고』 원편 권56「禮部回咨」, “禮部, 爲 咨覆 事. (...) 乾隆十五年二月日.”; 『동문회고』 원편 권56「禮部知會犯人監候緩決咨庚午」, “禮部, 爲 慎刑奉有恩綸事例歸畫一以重民命以廣皇仁 事. (...) 查李云吉誘脅女口越江轉賣 (...) 今仍應緩決. (...) 乾隆十五年十月十九日.”; 『동문회고』 원편 권56「謝緩決表製韓光肇使海春君咏」, “云云. 愚氓干紀, 恭俟罔赦之誅, 聖德包荒, 猥荷從輕之典, 拜命增感. (...) 乾隆十五年十一月初七日.”; 『동문회고』 원편 권56「回咨」, “朝鮮國王, 爲 欽遵恩旨罪人緩決 事. (...) 乾隆十五年十二月二十六日.”; 『동문회고』 원편 권56「禮部知會謝緩決表知道咨辛未」, “禮部, 爲 謝恩 事. (...) 乾隆十六年三月初一日.”

73) 『승정원일기』 영조 20년(1744) 2월 2일(庚戌); 김시종 사건 때 조선측에서 청의 緩決을 이해하지 못하고 絞刑으로 처리하고 난감해 했던 상황은 임현채(2017)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임현채, 앞

이운길을 완결로 하라는 청의 자문이 1751년 12월, 1752년 11월에도 이르렀고 1753년 5월 최종적으로 이운길에 대한 처벌을 充軍으로 결정해 보내왔다.⁷⁴⁾ 그러나 1752년 2월 시점에 영의정 김재로는 ‘완결’이 아직 처벌을 확정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운길이 이미 처형된 지 오래되었다며 난감해했다.⁷⁵⁾ 결국 다음해 8월 7일에 이 사실을 숨기고 자문대로 형률을 감해 처리하겠다는 회자와 사은표문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⁷⁶⁾

범월 사안의 처리는 청에서 체포된 범월 조선인을 인도받아 조선에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선은 조사한 결과와 형률에서의 擬律한 내용을 상주했다. 청은 刑部에서 검토하여 청률에 따른 처벌을 황제에게 올리고, 황제가 이를 가감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조선과 청의 상하관계가 문서상으로 관철되고 있었다. 다만 형률 집행의 주체는 조선이었기 때문에 실제의 형 집행이 청의 판결과 달랐더라도 이를 은폐하고 청의 처벌을 따른 것처럼 보고하는 모습을 이운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 논문, 2017, 518~519쪽.

74) 『동문회고』 원편 권56 「禮部知會犯人減等充軍咨」 “禮部爲欽奉上諭事, (...) 減軍者發邊衛充軍 (...) 一起絞犯李云吉, 因誘脅女口, 越江轉賣, 已經給親完聚緩決四次, 似應減軍等.”; 명대 이후 형벌 흐름은 유배형의 강화와 充軍 등을 특징으로 하며, 충군은 청대에 오면 군역에 충원한다는 요소가 탈락해 사실상 유배형으로 기능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김한밤, 「명대의 贖刑主義와 充軍의 팽창」, 『중국사연구』 142, 중국사학회, 2023; 김한밤, 「18세기 清朝의 軍流犯 관리와 新疆로의 發遣」, 『명청사연구』 45, 명청사학회, 2016.

75) 『승정원일기』 영조 28년(1752) 2월 4일(丙申) “在魯曰, 北道罪人李云吉, 自我國擬奏, 正法已久, 而彼國則每年更令緩決, 咨文今又出來. 所謂緩決, 似是姑置之意. 而既有來咨, 不可無回咨. 只以判付樣, 措辭撰出, 今此開市咨文入送時, 同爲入送, 何如? 上曰, 依爲之. 出學條.”; 『비변사등록』 영조 28년(1752) 2월 5일

76) 『승정원일기』 영조 29년(1753) 8월 7일(己丑) “洪益三, 以承文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北道犯越罪人李云吉, 正法已久, 而彼國, 連年以緩決移咨矣. 今番則以充軍減律事, 咨文出來矣. 只以依咨文爲之之意, 撰出回咨, 付送於皇曆齋咨官之行, 何如? 傳曰, 允.”; 『비변사등록』 영조 29년(1753) 8월 8일: 『동문회고』 원편 권56 「回咨」 “朝鮮國王, 爲 欽奉上諭減等犯越人死罪咨覆事, (...) 乾隆十八年八月十六日.”; 『동문회고』 원편 권56 「謝犯人減罪表製崔成大使洛豐君楸」 “云云. 愚恨干法, 政深訟罪之忱, 聖度包荒, 猥蒙從輕之典. (...) 乾隆十八年十一月初四日.”: 청은 이운길이 충군이 아니라 처형된 사실을 끝까지 몰랐을 것으로 추측된다. 범월을 저지른 조선인의 처벌에 대해 조선은 청과 외교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조율하고 있지만 실제로 형을 집행한 주체는 조선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조선이 범월 사안의 처리에 독자성을 발휘했다는 이화자(2008)의 견해에 임헌재(2017)는 옹정제 시기에 비해 건륭제 시기 온화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영조의 처결이 건륭제의 방침을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3) 후속 조사에서 드러난 서울-함경도 지역간 인신매매

1747년 영조는 이운길 외에도 사람을 초인해 데려간 일을 모두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11월 28일 비변사에 관서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고 영조는 이운길 외에 永川의 李哥와 京中의 金德金같은 이들처럼 서북의 무뢰배들이 서울사람과 함께 작당하는 일이 다른 도에도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조사하라는 전교를 내렸다.⁷⁷⁾ 12월 10일에도 서북인이 양인과 천인을 따지지 않고 협박하고 팔아넘기는 폐단이 그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⁷⁸⁾

소업·삼례 사건을 계기로 포도청은 이전에 있었던 인신매매 사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1748년(영조 24) 1월 14일 서울 東部 板廬 근처에 사는 布商 元尙裕가 체포되었다. 원상유는 서울에서 서울·경기 지역의 나이 어린 流民이나 사대부가의 어린 남녀의 노비를 유인해 함경도에 사는 이들에게 매매했으며 이미 십여 년이 지났음에도 이웃에 소문이 파다했던 것이다. 원상유가 자백한 인신매매 5건 총 7명의 사례에서 피해자는 대략 20세 이하의 노비 혹은 양인으로 성별은 6명이 여성, 1명은 남성으로 추정된다. 원상유가 두 차례에 걸쳐 자백한 인신매매는 총 9건으로 판매된 지역은 함경도 종성이 5건, 무산 2건이며 부령 및 경원이 1건이다.⁷⁹⁾ 원상유는 포상으로 서울과 함경도를 왕래하며 사람들을 초인해 함경도로 판매했으며, 구매자들 또한 대부분 포상으로 나타나있다. 18세기부터 함경도는 덕원의 元山浦를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했는데, 인신매매 이동 경로를 보면 서울에서 육로로 원산으로 이동한 다음 배를 타고 내지로 이동했다.⁸⁰⁾

이처럼 함경도를 비롯한 서북 지역으로 데려가는 인신매매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당시 이조판서 徐宗弼이 언급했듯이 함경도와 평안도의

77) 『비변사등록』 영조 23년(1747) 11월 28일

78) 『승정원일기』 영조 23년(1747) 12월 10일(丙寅)

79) 『승정원일기』 영조 24년(1747) 1월 20일(乙巳)

80) 함경도는 세포[細布, 麻布]의 산지로 이들 포상은 함경도산 세포를 가지고 서울과 함경도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었다. 18~19세기의 함경도의 산업과 유통망에 대해서는 고승희, 「18, 19세기 함경도 지역 유통로 발달과 상업활동」, 『역사학보』 151, 역사학회, 1996 참조.

인구가 적고 귀해서 그 값이 매우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이었다.⁸¹⁾ 함경도와 평안도로 향한 인신매매는 청과 인접한 지역으로 범월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 때문에 『속대전』에서도 해랑도와 북로의 왕래 규제와 인물초인해 서복으로 들어가는 자를 모두 사형으로 처벌한 것이다.

그러나 북도의 조선인과 청인은 서로 등을 어루만지며 농담하고 웃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면서 압록강과 두만강 인근을 넘나들며 단기 혹은 장기로 거주하고 있던 상황을 조정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다.⁸²⁾ 이운길이 인신매매한 18명 중 2명이 청인과 관계되었고, 그 뒤에 적발된 원상유가 비록 청인과의 거래는 밝히지 않았으나 모두 함경도에서 관매했음이 드러났다. 인구가 희박한 곳일수록 인신거래의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사람이 부족한 가운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던 국경지대로의 이동 또한 이루어졌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인신매매 범죄는 비밀 유지를 특징으로 하여 범죄 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전근대에 나타난 실증적 연구가 쉽지 않다.⁸³⁾ 제한적이거나 1747년 범월로 적발된 삼례와 소업의 사례에서 18세기 중반 국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의 한 단편이 포착되었다고 하겠다.

4. 맺음말

조선 전기 인신매매에 대한 규제가 『대명률』·『경국대전』내 존재했으나 후기들어 숙종 대 이후 영조 초반까지 이를 보완하는 受敎가 여러 차례 내려졌다. 영조 연간 大典의 정비 움직임 하에 1746년 간행된 『속대전』내 인신매

81) 『승정원일기』 영조 23년(1747) 12월 10일(丙寅)

82) 『승정원일기』 영조 22년(1746) 9월 14일(丁未) “堦曰, 慶源人崔一馨, 所謂北道兩班, 而後春清人撫其背曰, 汝已長大, 吾安得不老乎云云, 人皆掩口, 邊民之與清人相親, 類如是矣. 上笑曰, 以地近故然耶? 堦曰, 然矣.”

83) 인신매매 연구 실증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대 쓰촨성에서 이루어진 아동밀매범죄를 다룬 刘玲·李钢·薛淑艳·马雪瑶·周俊俊·徐婷婷·王皎贝, 「四川省拐卖儿童犯罪的时空演变过程及影响因素分析」, 『地理科学进展』 39(5), 2020 참조.

매 금지 규정은 당시 조청간 경계를 넘는 범월을 금지하는 규제와 연동되어 있었다.

18세기 영조 시기에 오면 함경도 뿐만 아니라 평안도 지역까지 인신매매의 종착지가 확대된 모습이 나타난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유인당한 여성과 어린 아동이 함경도나 평안도에서 매매되었는데,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국경 너머 청나라인과 매매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조선과 청 사이의 국경지대는 범월에 대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조선인과 청인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747년(영조 23, 건륭 12) 두만강 하류의 바닷가 등등기 지역에서 청인과 아이를 낳고 거주하던 조선 여인 2명 삼례·소엽이 체포되었다. 이들을 조사한 결과 청인과의 인신매매가 사실임이 드러났다. 이들을 인신매매한 범인은 이운길이란 자로 그는 18명을 함경도로 데려가 16명은 함경도인에게 팔았고 2명은 청나라 사람에게 팔았다. 소엽과 삼례는 인신매매로 변경지역에 팔린 다음 여러 차례 매매되었고 경계를 넘어서 청인과 함께 인삼이나 해삼을 채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준다. 변경인 평안도나 함경도로 들어가게 된 인신매매의 피해자는 조선과 청 사이 국경의 범월 증가 경향과 함께 자의든 타의든 국경지대를 넘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삼례·소엽 사건 이후 영조가 다른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다음 실제로 인신매매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함경도 포상 원상유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7명을 유인해 함경도로 데려가 판매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20세 이하의 여성이었다. 앞서 삼례를 납치할 때 간여한 자 또한 함경도의 포상이라는 점에서 함경도와 서울을 오간 상인집단, 특히 布를 취급하는 상인이 인신매매의 유인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18세기 무렵 범월로 보고된 사안 중에 여성과 아동이 포함된 사례들이 나타나 이들 가운데 인신매매 사례가 더 있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된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범월과 서북지역으로의 인물 초인은 모두 사형으로 처벌되고 있어 삼례와 소엽의 경우처럼 명확하게 국경지대에서의 인신매매 사례로 확정되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인신매매의 대상이 어린 여성이나 아동이라는 점은 고찰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함경도가 갖는 노비제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⁸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나 남녀의 아동이라는 점은 전 근대 여성이나 아동이 담당했던 노동의 실상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향후 인신매매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및 조선후기 여성과 아동 노동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84) 양계 지역은 군역의 부담이 큰 지역으로 함경도에는 군역을 수행하는 주인을 대신하는 예속인 雇工·率丁 등이 있었고, 국가에서도 이들의 조제를 묵인해 주었다. 특히 함경도의 독특한 사노비 형태로 土奴婢가 있는데, 토노비의 주인은 軍官이었다. 즉 군관이 함경도로의 노비 공급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함경도의 토노비 관련 연구로 다음을 참조. 도주경, 「조선후기 함경도 사노비의 존재양태와 국가 정책」, 『역사와현실』 125, 한국역사연구회, 2022, 365쪽. 함경도의 토노비에 대해서는 19세기 함경북도 호적자료를 검토한 다음의 연구가 참조된다. 임학성, 「19세기 전반 함경북도 호적 자료를 통해 본 어느 일가의 이주사와 토노비: 중국 연변박물관에 소장된 명천도호부 거주 리시연의 도광 2년(1822) 준호구 분석 사례」, 『고문서연구』 30, 한국고문서학회, 2016.

■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備邊司謄錄』『同文彙考』『大明律直解』

『受教輯錄』『新補受教輯錄』『續大典』『秋官志』『燃藜室記述』

黃六鴻 著, 김형중 역, 2000, 『福惠全書』 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선민 저, 최대명 역, 『인삼과 국경: 청-조선의 영토 인식과 경계 형성』, 사계절, 2023.

윤영인 외 7인,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2010.

이화자, 『조청국경문제연구』, 집문당, 2008.

_____, 『한중국경사 연구』, 해안, 2011.

강석화, 「조선후기 평안도지역 압록강변의 방어체계」, 『한국문화』 3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4.

_____, 「조선후기 함경도 육진지역의 방어체계」, 『한국문화』 3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_____, 「조청 국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화자, 『한중국경사 연구』(해안, 2011)에 대한 서평」, 『한국학 연구』 2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고승희, 「18, 19세기 함경도 지역 유통로 발달과 상업활동」, 『역사학보』 151, 역사학회, 1996.

김문기, 「19세기 조선과 청의 어업분쟁: 1882년 ‘조청무역장정’ 체결 이전까지」, 『19세기 동북아 4개국의 도 서 분쟁과 해양경제』, 동북아역사재단, 2008.

김선민, 「인삼과 강역: 후금-청의 강역인식과 대외관계의 변화」, 『명청사연구』 30, 명청사학회, 2008.

_____, 「웅정-건륭연간 莽牛哨 사건과 청-조선 국경지대」, 『중국사연구』 71, 중국사학회, 2011.

_____, 「18세기 후반 청-조선의 범월문제와 경계관리: 金順丁 · 朴厚贊 사건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_____, 「18세기 후반 훈춘 협령의 지역관리와 인삼행정」, 『사총』 93,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8.

_____, 「청대 만주의 봉금과 개발」, 『생태환경과 역사』 10, 한국생태환경사학회, 2023a.

_____, 「청대 길림지역의 기인과 토지 개간」, 『사총』 110,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23b.

김백철, 「19세기 과부약탈 사건의 재검토: 관습인가 범죄인가」, 『동아시아고대학』 64, 동아시아고대학회, 2021.

김성희, 「조선 숙종의 군신이라 정립과 존주대의」,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김영진, 「入關(1644) 이전 清朝의 와르카 쇄한 요구와 조선의 대응」, 『역사문화연구』 86,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23.

김일환, 「병자호란 贖還婦女 들의 존재 지우기」, 『동방학』 84,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3.

김종원, 「初期朝淸關係에 대한 一考察: 丙子胡亂時의 被擄人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71, 역사학회, 1976.

김준영, 「이상과 현실: 청대 琿春의 도시 형성과 조선인 사회」, 『동양사학연구』 166, 동양사학회, 2024.

김한범, 「18세기 淸朝의 軍流犯 관리와 新疆으로의 發遣」, 『명청사연구』 45, 명청사학회, 2016.

_____, 「명대의 贖刑主義와 充軍의 팽창」, 『중국사연구』 142, 중국사학회, 2023.

김혜자, 「조선후기 북변월경문제 연구」, 『이대사원』 19,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82.

- 남이슬, 「강희연간 청국인의 해양범윙과 조·청 양국의 대응」, 『명청사연구』 44, 명청사학회, 2015.
- 도주경, 「조선후기 함경도 사노비의 존재양태와 국가 정책」, 『역사와현실』 125, 한국역사연구회, 2022.
- 류은아, 「조선후기 인신매매 사건과 속종대 함경도로의 인신매매 금지 규제」, 『법사학연구』 69, 한국법사학회, 2024a.
- _____, 「18세기 초 서북지역 인신매매 사건과 법적 대응」, 『민족문화』 67, 한국고전번역원, 2024b.
- 민덕기, 「동아시아 해금정책의 변화와 해양 경계에서의 분쟁」, 『한일관계사연구』 42, 한일관계사학회, 2012.
- 박수밀, 「병자호란의 상흔과 청음 김상헌의 심양 억류 체험 고찰」, 『한국문화과예술』 31, 사단법인 한국문화과예술연구소, 2019.
- 박주, 「병자호란과 이혼」, 『조선사연구』 10, 조선사연구회, 2001.
- 변주승, 「조선후기 유민의 북방 변경 유입과 그 실태」, 『국학연구』 13, 한국국학진흥원, 2008.
- 서인범, 「조선헌대 서해 북단 해역의 경계와 島嶼 문제: 海狼島와 薪島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36, 명청사학회, 2011.
- 신세완, 「조선후기 齎咨官의 사행 활동과 변화 양상」, 『지역과 역사』 50, 부경역사연구소, 2022.
- 우경섭, 「1620~1627년 조선의 遼民 인식과 송환론」, 『동국사학』 74,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2.
- 이명현, 「환향녀 서사의 존재 양상과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60, 동아시아고대학회, 2020.
- 이욱, 「17~18세기 범윙 犯越사건을 통해 본 함경도 주민의 경제생활」, 한국사학보 20, 고려사학회, 2005.
- 이화, 「청의 증원입관 전후 조선인의 월경 문제를 둘러싼 조·청 교섭」, 『한국학보』 29-3, 일지사, 2003.
- 이화자, 「17-18세기 월경문제를 둘러싼 조정 교섭」,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 이훈, 「청 초기 장백산 탐사와 황제권」, 『동양사학연구』 126, 동양사학회, 2014.
- 임학성, 「19세기 전반 함경북도 호적 자료를 통해 본 어느 일가의 이주사와 토노비: 중국 연변박물관에 소장된 명천도호부 거주 리시연의 도광 2년(1822) 준호구 분석 사례」, 『고문서연구』 30, 한국고문서학회, 2016.
- 임현채, 「영조대 조선인 범윙사건 처리방침을 통해 본 조선의 對淸 태도」, 『명청사연구』 48, 명청사학회, 2017.
- 장정수, 「16세기 말~17세기 초 조선과 건주여진(建州女眞)의 배후 교섭과 신충일(申忠一)의 역할」, 『한국인물사연구』 25, 한국인물사연구회, 2016.
- 정혜중, 「청대 조선인과 청국인 범윙의 특징: 양국 범윙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6, 명청사학회, 2006.
- 한명기, 「병자호란 시기 조선인 포로 문제에 대한 재론」, 『역사비평』 85, 역사비평사, 2008.
- 한승현, 「조선 후기 明 遼民 우대책과 濟南 王氏의 관직진출」, 『한국문화』 8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
- 한임선·신명호, 「조선후기 海洋境界와 海禁」, 『동북아시아문화연구』 21,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9.
- 刘玲·李钢·薛淑艳·马雪瑶·周俊俊·徐婷婷·王皎贝, 「四川省拐卖儿童犯罪的时空演变过程及影响因素分析」, 『地理科学进展』 39 (5), 2020.
- 李岚, 「清代的秋审制度」, 『清史镜鉴』 第1辑, 2008.
- 王燕杰, 「清朝前期與朝鮮邊務交涉與合作研究: 以朝鮮人越境犯罪案件的審理爲中心」, 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Crossley, Pamela K.,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Tiano, Susan, "Human Trafficking." *Borderline Slavery: Mexico, United States, and the Human Trade*, Moira Murphy-Aguilar Eds, Burlington, VT: Ashgate, 2012.

DiRienzo, C. E., & Das, J., Human Trafficking and Country Borders,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Review*, 27(4), 2017.

Lenski, Noel, "Slavery in the Roman Empire," In: Pargas, D.A., Schiel, J.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Global Slavery throughout History*, Palgrave Macmillan, Cham, 2023.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승정원일기 <https://sjw.history.go.kr>

비변사등록 <https://db.history.go.kr/joseon/level.do?itemId=bb>

동문회고 <http://contents.nahf.or.kr>

조선시대법령자료 <https://db.history.go.kr/joseon/law.do>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Human trafficking in the Chosŏn-Qing Borderland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case of Samnye and Soŏp in 1747

Ryu, Euna*

The regulations prohibiting human trafficking in the Chosŏn Dynasty were formally legislated in the Soktaejŏn (續大典) compiled during the reign of King Yŏngjo (英祖)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regulations in the Soktaejŏn that prohibit human trafficking are connected to those that prevent the spread of trafficking on land and sea, as well as to the measures that intensify crackdowns. Human trafficking, which had been revealed since the seventeenth century, or the crime of human trafficking, emerged as a destination for human trafficking not only in Hamgyŏng province (咸鏡道) but also in P'yŏngan province (平安道) during the reign of King Yŏngjo in the eighteenth century. Women and young children lured from Seoul and Kyŏnggi province were trafficked in Hamgyŏng-do or P'yŏngan-do, and during the investigation,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hey were trafficked to Qing people across the border became an issue. Between 1735 and 1741, cases of trespassing were detected, including cases involving women and children, and in November 1747, it was revealed that Samnye (三禮, 參禮) and Soŏp (小業), who had given birth to a child with a Qing person and lived in the Tŭngdŭnggi (登登磯) area on the coast of the lower reaches of the Tuman River (豆滿江), were trafficked to Qing people. At that time, the trafficker took eighteen people to Hamgyŏng through Yi Un'gil (李雲吉,

* Ph.D Candidate in Department of History, Konkuk University

李云吉), sold sixteen people of them to Hamgyŏng people, and sold two people to Qing people. It is possible that th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who entered the border areas of P'yŏngan or Hamgyŏng participated in the increasing trend of trespassing between Chosŏn and Qing. The cases of Samnye and Soŏp, although limited, provide an example of movement across the border through human trafficking.

Key words : human trafficking, kidnapping, Ch'oin, Choin, Hamgyŏng, Hamgyeong, women, children, Soktaejŏn, Sokdaejeon, Chosŏn, Joseon